

**살충제사용에 관한 비판적인 방송에서 특정한 사과재배자를 지명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과재배업자들이 방송국을 상대로 제기한
제품비방소송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AUVIL v. CBS 「60 MINUTES」
20 Med. L. Rptr. 1361 (서부워싱턴주 관할 연방지방법원, 1992)

사건개요

1989. 2. 26. CBS 방송국의 「60 분」 이 라는 프로그램은 보통 사과재배업계에서 성장조절제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Alar」 라고 알려진 살충제에 관해 비판적인 방송을 하였다. 위 살충제는 과일이 나무에 보다 오래 열려 있게 함으로써 모양도 좋아지고 균형도 잡히며 크기도 커질 뿐만 아니라 보관기간도 오래 되게 하는 약품으로 많은 공공이익단체 특히 그 중에서 자연자원보호위원회(NRDC)는 Alar 가 화학적으로는 발암물질로 변질된다는 자체의 연구결과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위 Alar 는 과일에 묻어 있어 껍질에서 씻기지도 아니하며 심지어 껍질을 깎아내어도 제거되지 아니하는데 어떠한 제조공정과정에도 불구하고 사과 내에 잔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성은 사과제품의 가장 큰 소비자인 어린이들에게 가장 심각한 타격을 미치게 된다. 위 「60 분」 프로그램에서는 「사과」 라는 특정적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지만 화면상 붉은 사과를 내보냄으로써 사과가 주된 문제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위 프로그램이 방영되자 이 문제가 전국적인 논쟁으로 번졌으며 이러한 방송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극적이고도 신속하였다. 전국적으로 나아가 세계적으로 판매와 가격이 급락하고, Alar 의 제품은 시장에서 수거되었다. 한편 끈질긴 업계의 노력으로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재배업자 및 관련업자는 대충 7,500 만 달러 상당의 손실을 입었으며 경제적 손실 외에도 사과재배업자들이 도산하게 되고 업계는 공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따라서 4,700 명의 워싱턴주 사과재배업자들은 CBS 와 CBS 의 지방자회사인 KREM, KIRO 및 KIMA 사와 위 연구서를 작성한 환경보호단체인위 NRDC 및 이러한 연구서를 방송사에 배포한 Fonton 통신사를 피고들로 하여 집단소송형태로 야키마 군지방법원(Yakima County Superior Court)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후 당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지방사를 피고들로 하는 공동소송이 주적상이관할(diversity jurisdiction)을 구성하지 아니함으로써 환송(remand)을 요하는지, 둘째,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standing)을 가지는지 이다.

결정요지(1992. 6. 5.자)

1. 사과살충제 사용으로부터 야기되는 건강상의 위험에 관한 텔레비전방송이 특정한 사과재배자를 지명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과재배업자들이 방송국을 상대로 집단소송의 형태로 제기한 제품비방소송(class action product disparagement lawsuit)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원고들은 자신들이 명예훼손되었다(defamed)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 비방당하였다(disparaged)고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앞서와 같이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어서가 아니라 제품의 품질이 비방당하였다는 이유로 제소한 소송에서 사과재배업자들은 이러한 집단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이러한 비방방송이 허위(false)이고 악의(scienter) 또는 경솔한 부주의(reckless disregard)로 방송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3. 사과재배업자는 환경보호단체를 상대로 위 단체가 식품에 화학품의 사용으로부터 아동에게 초래될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 제품비방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연구는 사실상 모든 과일 및 야채로부터의 위험성에 대한 것이지 특정적으로 사과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정이유(요약)

Nielsen 판사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계류되어있는 재판은 원고측의 환송신청과 피고측의 환송기각 및 예비적으로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신청에 관해서이다.

A. 먼저 환송에 관하여 본다. 자회사들이 방송내용에 관하여 편집상 통제(editorial control)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자회사들은 본사와의 약정상 이러한 통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고 사실상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이유로 지방방송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방송될 프로그램을 편집상 정열을 한 경우도 있었다.

「60 분」의 프로그램도 전국적으로 일요일 저녁 7 시에 동시에 방영하기 위하여 시차상 서부기간대에는 방영 3 시간 전에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위성으로 전송되므로 지방방송사로서는 프로그램을 정열하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기간이 있게 된다. 재방송 경우 예상될 수 있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내용이 이미 공지의 사실에 속하는 경우는 충분한 지식과 법적 통찰을 가지고 전문가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전송내용을 조정하고 즉석에서 재량적 검열을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워싱턴주의 이에 관한 책임원리는 일반적인 「매개책임」(conduit liability)원리인 「제 3 자에 의해 공표된 명예훼손적 기사를 단순히 전달하든지 전송하는 자는 그가 이러한 명예훼손적 성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고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일반적 원리에 부합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지방방송사로서는 미리 그 내용에 관하여 텔렉스로 방송내용의 요약을 받고 따라서 지방방송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사과와 암에 관한 것으로 워싱턴주의 관련업계에 심각한 이해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업자들로서는 이러한 방송이 방영되지 아니하는 것을 보다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해서 이러한 내용이 명예훼손적이라는 것을 암시하지 않는 것이다. 즉 모든 명예훼손적 자료가 논쟁적이지만 논쟁적인 자료가 모두 명예훼손적이지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media's right of expression) 및 공중의 알 권리(public's right to know)에 관한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초래하는 상황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언론사가 지리적위치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책임을 달리한다는 것도 비정상적이다. 결국 본사와 지방사를 모든 공동피고로 하는 것은 완전한 주적상이관할(complete diversity)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적상이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환송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환송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하한다.

B. 다음 제품비방소송과 명예훼손소송에 대해서 본다. 제품비방과 명예훼손은 개념적으로 다른 불법 행위이다. 후자는 인식 즉 평판과 성격들에 대한침해를 다루고 있으며, 전자는 금전적 손실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두 소송의 구별은 어휘적 관점(semantic standpoint)에서 곤란을 야기하고있다. 그러나 학설은 침해적인 허위적 진술에 대한 불법행위와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는 상이한 법익을 보호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전적으로 상이한 근원을 가진다는 데에 일치하고 있다. 즉 명예훼손소송은 피해자의 개인적 평판(personal reputation)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반면 침해적인 허위적 진술로 인한 소송은 피해자의 금전적 손실(pecuniary loss)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표로 인해 야기된 특별손해(special damage)의 경우에 허용된다. 따라서 개념적으로 구별되는 이 두 소송에 있어 입증사항도 달라지게 되며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는 비방소송에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침해된 권리가 무엇이며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심리하여야 하나 이러한 두 소송의 요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소송의 법리가 비방소송에서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관계성」 원리(of and concerning) principle)는 침해적 기사가 내용상 취지(text, context)로 보아 그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특정한 개인 또는 제품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것을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재배업자들이 가장 완곡하게 언급되는 외에는 달리 언급되지 아니하였다. 방송상 대상은 재배업자들이 아니고(합리적인 시청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도 않을 것이다) Alar 라는 제품을 강조하면서 위험한 물질의 농업상 사용에 관한 것이다. 즉 Alar 가 과일에 관계된 것으로 사과가 타격을 받게 되고 따라서 그 재배업자들이 타격을 입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방송이 명백히 사과의 살충제에 「관계한」 것으로 그 범위내에서 재배업자들의 동일성이 특정될 수 있는 것이다.

C. 집단명예훼손소송(Group Libel) 집단명예훼손이 비방소송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변호인도 언급한 바 없으며 당원역시 발견하지 못하였다.

집단명예훼손소송원리(group libel doctrine)가 비방소송에도 그 적용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개념에는 두 가지의 이론이 있다. 첫째는

「약화」(dilution)이론이다. 만약 집단이 충분히 광범위한(sufficiently broad) 경우에는 어느 구성원도 현실적으로 개인적 손해(personal injury)를 입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든 변호사들은 엉터리(shysters)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 변호사들에게는 침해적일 수 있으나 그 어느 변호사도 자신이 그 성격 및 평판이 이러한 무의미한 일반성(a vacuous generality)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합리적으로 다투지 아니한다. 둘째는,

「동일성」(identification)이론이다. 전체집단이 명예훼손되었을 경우 이러한 집단전체에 관한 주장(classwide allegations)이 각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입증하기는 통상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일반적 원리는 (1) 집단이 명예훼손적 방송이 각 그 구성원에게 적용된다고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만큼 크지 않든지, (2) 방송이 행해진 상황이 일정한 특정 구성원이 목표가 되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든지이다. 한편 이러한 원리는 명예훼손소송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적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개념은 비방소송에서도 그대로 매끈하게 맞물리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 「미국내의 모든 사과」는 적당한 규모의 집단체이지만, 이러한 언급은 미국내의 Alar 를 사용하거나 하지 않거나에 관계없이 미국내의 모든 사과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방송 후 소비의 극적인 하락에서 알 수 있듯이 시청한 소비자들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집단명예훼손의 원리가 명예훼손소송에서 명백한 호응을 가지고 있고, 이에 상응하는 원리(parallel rule)가 비방소송에서도 앞서 말한 두 가지의 목표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맹목적인 적용은 특히 사실상 비방된 제품이 충분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침해가 사실상 약화(In fact diluted)된 경우에 그러하다.

D. 뉴욕 타임스 사건에서의 기준명예훼손소송에서 일반적 원리는 만약 훼손당한 자가 공공적 인물(public figure)인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전환되고 입증의 정도가 높게 요구된다. 즉 침해적 기사가 허위인 것으로 증명될 뿐 아니라 이러한 허위성이 사실상 악의(actual malice)에 의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New York Times v. Sullivan, 376 U.S.254). 이러한 원리는 진실성에 관련된 고의성(willfulness) 내지 적어도 경솔한 부주의(reckless disregard)라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상당한 진실성이 있는 경우에는 허위성이 배척된다. 워싱턴주에 있어서 공공적 인물과 사적인 인물과의 구별(public/private figure distinction)은 크게 관련이 없다. 입증책임은 항상 원고에게 있고, 언론사가 피고인 경우에 있어서 과실의 입증책임은 명백하고 납득할 수 있는 증명(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일부 법원에서는 이러한 원리를 소송의 대상이 중요한 공공의 관심사항(grave public concern)인 경우에는 비방소송에서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의 유효성은 워싱턴주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문제로 대두된다. 전국의 식품공급에 있어서 발암물질의 존재보다도 더 중대한 공공의 중요성의 문제를 상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소비자들의 대부분이 어린이들인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하다. 공공의 이익 또는 공공의 인물의 문제를 차치 하고서도, 허위성 및 악의 또는 경솔한 부주의의 입증 필요성은 비방소송에서도 일반적 원리이다. 이러한 엄격한 원리는 위 뉴욕타임스 판결 이전에도 관습법상 존재하여 왔다. 이러한 입증은 헌법상 요구되어진다. 더욱이 이러한 점에 있어서 관례도 드물지만 이러한 빈약한 판례는 제품이 비방 되었으나 개인적 평판은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증가된 입증책임(increased burden)을 인정하는 워싱턴주에는 지침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여 입증하도록 요구되어진다. 즉시 신청(instant motion)은 명예훼손 및 비방에 관한 포괄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만 허위성 및 악의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있다. 향후 개시절차(discovery)가 쟁점정리 이전에 행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1) 위 지방방송사들(KREM, KIRO, KIMA)의 악식재판신청은 허가한다.
- (2) 원고의 환송신청은 각하한다.

(3) CBS 의 각하신청 및 예비적 약식재판신청은 각하한다.

(4) NRDC 및 Fenton 언론사의 신청은 「관련성」 원리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보다 밀접한 문제를 야기하므로 별도의 결정으로 고지한다.

결정요지(1922. 6. 18.자)

위 방송은 부분적으로는 NRDC 가 행한 「감내하기 어려운 위험(risk)-어린이들의 식품에 대한 살충제(이하 Risk 라고 한다)」라는 연구 결과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그 사용된 용어(terminology)와 제시하고 있는 방법(mode)에 있어 일반공중에게 대한 것이기 보다는 의회 및 행정부와 과학연구단체 내지 환경보호단체에 대한 것으로, 그 내용이 과장된다든지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단지 주장된 사실과 자료 및 통계들을 단순히 편집(dry compilation)한 것이다. 「60 분」의 프로그램과는 달리 위 연구서에는 전국의 모든 사과들이 위험하다는 암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Alar 의 사용이 감소하고있으며 1988 년도의 생산된 제품 중 단지 10% 남짓만이 Alar 를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위 연구서가 위 「60 분」의 프로그램의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위 연구서의 범위는 보다 광범위한 것이다. 물론 위 연구서의 가정, 자료 및 방법론이 오류(flawed)일 수도 있고, 도달한 결론 자체도 잘못된(erroneous)것 일 수도 있으며 그 연구서에 대한 신뢰도도 달리 평가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당사자적격(standing)의 입증이라는 본 안전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비방소송에서 이러한 실질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NRDC 와 Fenton 언론사의 약식재판신청을 허용한다.